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영주시장

1. 제안 이유

우리시가 2005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인건직 홍보전시관 건립>

◦ 추진개요

-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인건직을 특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건직 홍보전시관을 건립, 홍보효과 거양
- 당초 풍기I·C인근에 신축중인 농업인복지회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과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건립위치 부적정 등으로 봉현면 농공단지에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도 축소하여 시행하고자 함

◦ 사업계획

- 사 업 비 : 700,000천원(국비 400,000 시비 300,000)
- 위 치 : 봉현면 오현리 20-4번지
- 건축규모 : 500㎡(151평, 전시관, 판매장 등 1층 건물)
- 부지면적 및 가액 : 1,706㎡(516평) 105,942천원(공시지가)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 추진기간 : 2005. 8. ~ 2006. 3

※ 당초 봉현면 대촌리 178번지 일원에 2층 990㎡ 건축규모로 건립 계획한 바 있음.

◦ 사업추진 현황

- 2004. 03. 19 : 국비 4억(특별교부세)교부결정→04. 1회 추경편성
- 2004. 05. 21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자체심사)
- 2004. 12. 22 :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사의회)

◦ 향후 추진계획 : 예산 확보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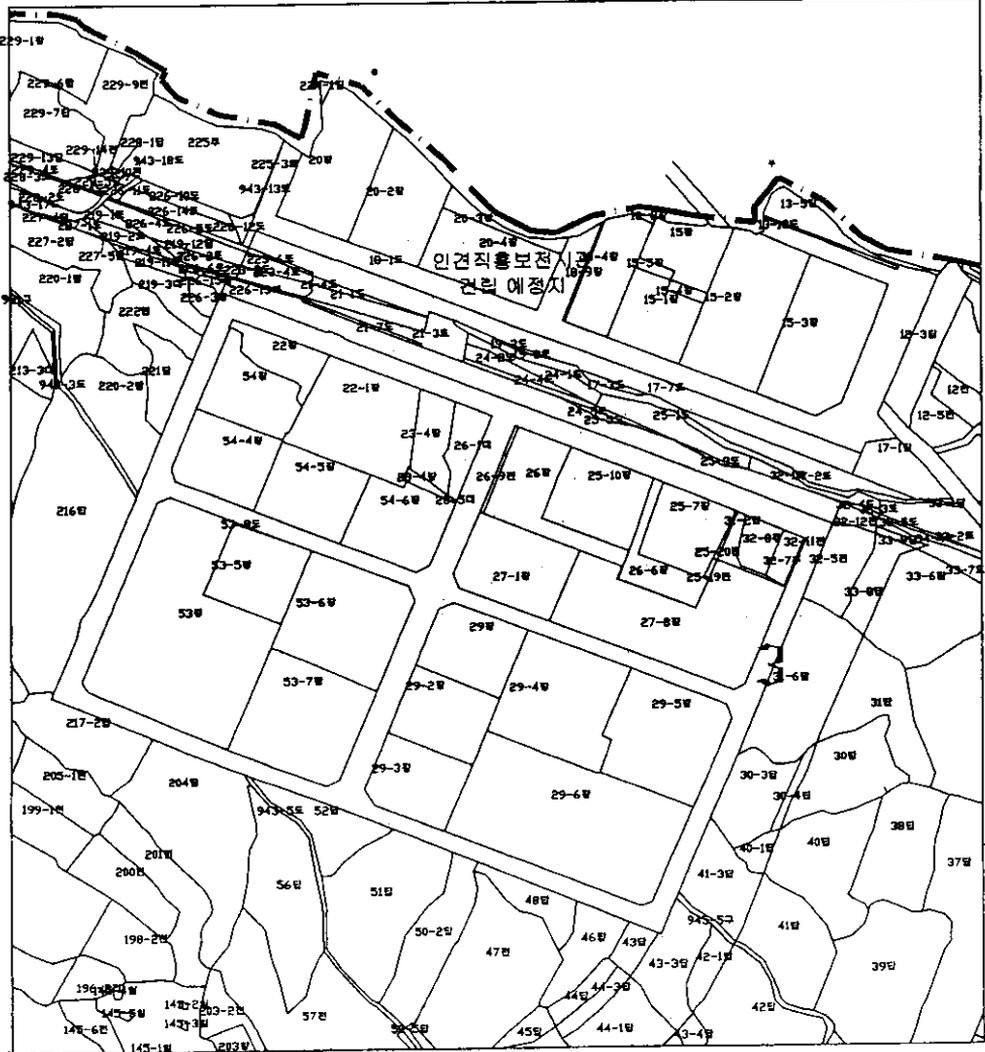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참조

- 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표)
- ②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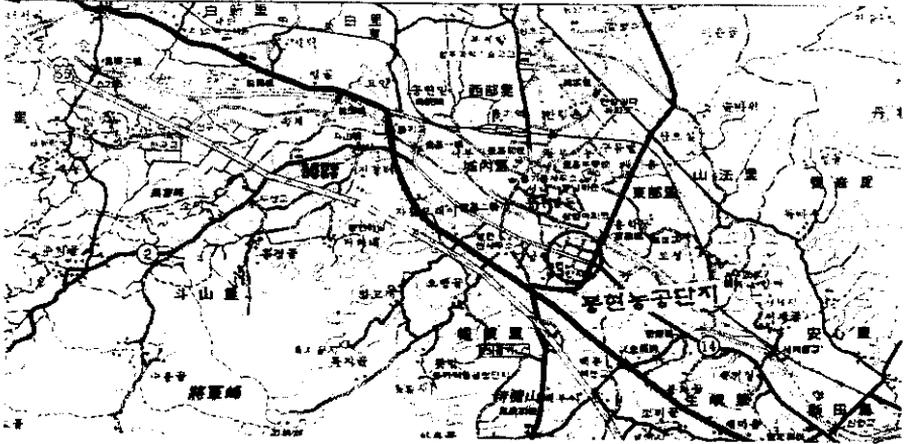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위치도



□ 위치도



□ 전경사진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9·1·2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 ~ ⑤ <생략>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